

「꿈나무 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꿈나무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가입대상 및 예금과목

-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고 함)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의 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한다.

제3조 약정기간 및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월단위로 만기를 지정하며 최초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적립방법

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 1회 최저 1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이자

-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 ② 고객이 예금신규 시 지정한 희망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예금 만기 전 3년간 성공 축하금리(연 2.0%)를 지급한다. (단, 희망대학 등록은 만 14세까지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④ 고객의 입학, 졸업, 해외연수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고시한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⑤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고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 ⑥ 이 예금은 다음 거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연 0.4%)의 우대금리를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 0.2%) (재예치 시에는 미적용)
 2. 가입기간 별로 일정 횟수 이상 납입 시 (연 0.2%) 우대 (재예치 시에도 적용)
(1년: 10회, 13~18개월: 15회, 19~24개월: 20회, 25~30개월: 25회, 31~36개월: 30회)
 3. 만기 자동재예치 시 (연 0.2%)
 4.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스마트폰뱅킹 가입 시 (연 0.2%)(재예치 시에는 미적용)

제6조 재예치

- ① 신청 고객에 한하여 예금 만기일에 기존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세후 원리금을 3년 단위로 자동회전 예치하는 것으로 한다.(단, 만기일에 고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은행은 고객에게 자동 재예치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통장인자 또는 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한다.

- ② 압류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재예치를 할 수 없다.
- ③ 재예치 시에는 재예치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약정금리와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며, 재예치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한다.

제7조 분할해지

- ① 분할해지는 이 예금이 재예치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예치 원리금 범위내에서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허용한다.
- ②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은 최초 가입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5월 8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년 9월 12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 기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